
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석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853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15.

발의자 : 강석진 · 함진규 · 김상훈
김승희 · 주광덕 · 장석춘
이완영 · 윤상현 · 김성찬
지상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·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,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이 아닌 암센터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, 임원의 결격사유는 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화하는 것임(안 제31조제8항 신설).

암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

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임원) ① ~ ⑦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1조(임원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<u>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u>